

##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Reform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현문수(Hyun, Moonsoo)\*\*

1. 머리말
2. 과제 도출을 위한 절차
3. 법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4대 과제와 방향
  - 1)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 2)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 3)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 4)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4. 맺음말

---

\* 이 논문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기록의 날(2017. 6. 9) 정책세미나 발표를 위해 작성한 내용(공공기록물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moonsoo925@gmail.com).

■ 투고일 : 2017년 10월 19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26일

## 〈초록〉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공기록물법, 법률개정, 공공기록물 관리, 전자기록관리**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nd examined researches providing tasks of revising of the law or rebuilding public records policies related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The 4 task areas were identified, which wer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ctivities, the reexamination of the appraisal systems for public records and archives, the transition into the 2nd generation-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s/archival institutions. Then it placed the issues into the 4 areas, and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in each tasks. Reminding that the task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are not comprehensive, further suggestions and arguments will be expected for reform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Keywords :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law reform, public records management, public archival management, digital/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 1. 머리말

1999년 현대적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관리는 빠르게 지름길을 거치며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 제대로 현대 기록관리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기 전에 해외 모범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법체계의 일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행되어 온 구제도의 실무에 뿌리를 두고 있고(김세경 2007), 다른 일부는 문서로 수용한 국제 표준과 해외 국립기록관리기관의 모범실무를 차용하였다. 현대적·전자적 업무환경 내에서 내실 있게 기록관리의 실무 변화를 경험하거나, 그 과정과 결과를 고유의 법체계와 우리의 모범실무로 정립하지도 못하였다. 이 때문에 업무현장에서의 실무이행에 있어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장도 지속되지 못했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및 이후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배치 확산은 공공 기록관리 영역이 또 한 번 도약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 기록관리 영역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관한 공공 기록이 임의적으로 폐기되고(경향신문 2010. 11. 8.), 최근에는 주요 국정할

동이나 의사결정 기록화마저 이루어지지 않거나(설문원 2017) 임의적으로 공공기록을 조작하는(JTBC 뉴스 2017. 10. 12) 사례도 드러났다. 그 과정에 기록정신과 원칙은 지속적으로 흔들렸고, 공공 기록관리 체제도 표류했다. 국가기록원은 주도적으로 공공기록의 민간시설 보존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시도하면서(국가기록원 2015. 8. 12; 전자신문 2015. 10. 14) 합의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 기록관리 체제 전환을 꾀했다. 이로 인해 공동체 내의 많은 우려와 견해의 충돌이 있었고, 전문가집단 내 이해관계의 폭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송정숙 2015; 손주연 2016; 안세기 2015; 양광완 2015; 이소연 2015; 이영곤 2015a; 전일 2015).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방안 강구가 우선이라는 기록학회의 의견을 불수용하며(국가기록원 2015. 9. 8)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한국기록학회의 우려와 맥을 함께 하는 검토의견을 바탕으로(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5, 14)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파기되었다.

기록관리 영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련의 사건에도, 역으로 정부업무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및 기록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성장했다.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다시 기록관리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현재의 실무로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새로운 기록관리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이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의 필요성은 일부 연

구를 통해 드러났다. 김유승(2008)은 2006년 전부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의 미비사항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과 기록물공개, 웹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서혜란(2009)도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SWOT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공공부문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 기록관리 거버넌스 변화 및 기록관리 인식 부족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상부 주체가 주도하는 '단방향 선형 발전모델'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발전해야 함을(서혜란 2009) 강조하였다. 안병우 외(2012) 역시 2013년 공공기록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6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최근 5년의 실무 및 정책적 논의를 담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이지도 못하다. 최근 다시 공공기록물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인식 틀 내에서 이루어진 면담 연구(현문수, 정상희, 박민영, 황진현, 이소연 2017)이거나 기록관리 기구 개편에 집중(조민지, 이영남 2017)하는 한계를 보인다.

## 2. 과제 도출을 위한 절차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과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가 공공 기록관리의 현안 진단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현안 토론회와 4회에 걸쳐 진행된 정책포럼의 발표문 및 토론(〈표 1〉)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디비피아(DBpia)를 통해 최근 5년간 공공 기록관리 체제 및 정책 전환, 공공 기록물법 개정을 의미 있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연구(〈표 2〉) 등을 바탕으로 4개 주요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일부 관련된 논의의 근거를 참조하기 위해 5년의 시기를 초과하는 일부 연구도 참고하였다.

〈표 1〉 국가 기록관리체제 진단 관련 발표 및 토론회

발표 및 토론회명	개최일자	주요 내용	연구 관련 주요 과제
2016 기록관리 긴급 현안 토론회	2016. 11. 12	대통령기록 수난 시대를 바라보는 기록전문가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의 정의와 범위</li> <li>■ 기록 생산 관리 통제</li> </ul>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2016. 11. 16	최순실 사태를 통한 대통령기록물 및 기록 관리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의 정의와 범위</li> <li>■ 기록 생산 관리 통제</li> </ul>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7. 2. 16	국가기록관리체제 및 기구의 진단과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기관의 역할</li> <li>■ 기록 생산 관리 통제</li> <li>■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li> </ul>
제113회 공동 월례 연구발표회 및 정책 포럼 1	2017. 3. 11	기록관리 프레임의 새로운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생산[이전] 관리 통제</li> <li>■ 기록관리기관의 역할</li> <li>■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li> </ul>
제114회 공동 월례 연구발표회 및 정책 포럼 2	2017. 4. 8	기록관리 정책 아이디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li> </ul>
제115회 공동 월례 연구발표회 및 정책 포럼 3	2017. 5. 13	기록관에서의 제도·업무기능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생산 관리 통제</li> <li>■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보존 기간 재편)</li>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li> <li>■ 기록관리기관의 역할</li> </ul>
제116회 공동 월례 연구발표회 및 정책 포럼 4	2017. 6. 17	전자기록관리 정책 개선방향의 아젠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li> </ul>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2017. 7. 13	정보공개, 대통령기록 관리 및 공공기록관리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li>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li> </ul>

〈표 2〉 공공기록물법 개정 및 기록관리 정책 재설계 논의 연구

연구	주요 내용	연구 관련 주요 과제
박성진 (2017)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과 보존기간 책정의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 (분류/편철)</li> </ul>
설문원 (201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 (분류)</li> </ul>
안병우 외 (2012)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전망하며 6가지 측면에서 현황 진단 및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록관리체제 재설계</li> <li>■ 기록관리기관의 역할</li> </ul>

이승억, 설문원 (2017)	현행 전자기록관리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재설계 대상 정책영역 제시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이승일 (2014)	국가기록관리체제 문제 진단 및 체제개편 제안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
최재희 (2014)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의 측면에서 법제의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언	■기록 평가/폐기권 강화
현문수 외 (2017)	기록관리 실무자 및 교육·연구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의견을 범주화하여 제시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표 1〉에 정리된 발표 및 토론의 내용과 〈표 2〉에 정리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연구의 범위와 관련된 주요 토픽은 ▽ 기록 범위의 재설정을 포함하는 기록 생산 관리 통제 강화, ▽ 기록의 평가 및 폐기 권한 강화,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등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재설계의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4개의 범주를 향후 법제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다음의 4개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확인된 문제와 드러난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1〉 4대 과제(안)

- ①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 ②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 ③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 ④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물론, 법제 개정을 위해 이들 4개 과제만 논의되어야 한다거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도출된 4개 과제는 최근 기록

공동체의 주요 논의 영역이며, 개별적인 실무 개선에 앞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짐에도, 기록관리 정책기구 면에서의 혁신과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조민지와 이영남(2017)의 연구에서 충분히 포괄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문제의식은 공유함에도 공공기록물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포괄 범위는 영역 도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민간기록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나 발표도 제외하였다.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일부로 민간기록관리기관 및 민간 기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공공 기록관리에 좀 더 집중하여 과제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역시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3. 법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4대 과제와 방향

#### 1)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는 지난 2005년 기록관리혁신의 첫 번째 과제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2005). 그만큼 의미 있고, 당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록관리 정책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2005년 기록관리혁신 이후 공공기록물법이 전부개정되었고 10년 이상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현재 기록공동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생산된 문서가 없어 중요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한 둘이 아닐 만큼(설문원 2017; 하승수 2016; 이상민 2017. 3. 11) 공공업무는 충분히 기록화되지 않았다. 기록화된 사안과 관련하여서도 ‘무엇이 기록인가’의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이광철 2016; 최재희 2016). 기록이 정치적 다툼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면서 (김장환 2016) 오히려 기록화의 범위와 의미마저 축소되었음은 물론, 포괄적 기록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일련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무엇이 기록인가’를 면밀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행 법령의 정의나 주요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아도, 실질적인 관리 대상 기록은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법령상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법률 제3조의2)이다. 또 법령은 “전자기록물”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시행령 제2조의2)로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법률 제16조 1항)함의 원칙은 포괄적인 기록 생산 및 관리를 전제로 함에도, “(전자)기록물”의 정의는 오히려 기록의 구현형을 강조하고 있어, 포괄적 생산 통제나 획득 및 관리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이 규정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아도 결재문서를 비롯한 문서형 기록 위주로 한정되는 한계를 보여, 사실상 다양한 유형의 기록화 결과물을 획득 및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업무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기록화하려면 논의의 프레임을 ‘기록’에서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이 기록인가’에서 ‘무엇을 기록화할 것인가’로 사고의 틀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단계로 기록관리의 통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곽건홍 2017. 3. 11; 김익한 2016. 11. 12; 설문원 2017; 설문원 2017. 3. 11; 현문수 2016. 11. 12). 이를 위한 제도와 조직 구성, 역할/책임 및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한다. 기록에서 업무로의 논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다양한 유형의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세트를 실효성 있게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두·전화·메신저·비공식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법제의 테두리 내에서 기록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계속 누락된 ‘이메일(전자우편)’도 포함된다. 공공 업무과정에 이메일 송수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메일은 업무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서 향후 기록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현재 공공기록의 평가는 평가 단위의 측면에서는 단위과제별로, 평가 주체의 측면에서는 생산기관 주도로 이행된다. 또한 공공기록의 평가 도구도 ‘보존기간 준칙(2012)’,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시행령 별표1)’ 및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이 개발한 기록관리기준표이다. 이 중 보존기간 준칙은 공통기능에 대한 준칙을 처리과 및 기관공통 기록관리기준표 상의 보존기간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국가기록원 2011, 1) 규정한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생산 시/이전 평가’, ‘기록관의 한시기록 및 준영구 기록 대상 재평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한시/준영구기록 대상 재평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수집’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최재희 2014), 이 중 ‘생산 시/이전 평가’ 단계에만 명시적으로 확인된 평가도구가 활용할 뿐이다. 생산 이후의 평가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적용되는 평가도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최재희 2014).

포괄적 거시평가의 입장(LAC 2014)에서 살펴보아도, 현행 평가체계는 단순히 정부기능분석에 따른 기록평가만을 위한 것이며, 생산기관이 판단하는 중요 가치에 따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 여부가 판단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록 보존의 요구가 소외되는 한편(이승억 2014), 국가 기억기관으로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도 크게 약화되는 문제를 불러왔다. 장

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대상과 선별과정 대한 전면적 재고민, 그리고 선별과 평가의 의사결정 주체와 역할, 기능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승익 2014; 최재희 2014) 현장을 포함한 공동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직된 보존기간 체계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은 “대통령 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록에 대해 일률적으로 ‘1, 3, 5, 10, 30, 준영구, 영구’(시행령 제26조1항)중 하나의 보존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보존기간 1년이나 준영구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법정 7종 보존기간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상으로는 한시기록과 영구보존기록으로만 구분을 하자는 주장(이영남 2017; 현문수 외 2017), ‘유한보존기록물’을 기록관이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이승일 2014)도 일부 논문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 주장은 영구보존기록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개입하되, 한시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설정의 자율권을 기록관에 부여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재희 2014). 다만, 이러한 방안은 국가사회적으로 남겨져야 할 기록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기능이 충분히 보장됨을 전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단적인 평가 결정체제가 아니라 생산기관은 물론이고 기록공동체, 외부 관련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이 보존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서혜란 2009; 설문원 2013; 이승익 2013; 최재희 2014) 기록공동체 내의 주장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가체계 재설계를 위해서는 현행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부여체계만으로 우리 사회의 기록을 충분히 선별하고 역사로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처분동결이나 처분중지를 공고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현문수 2017) 및 평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 및 기록 생산의 변화(Cumming & Picot 2014)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의 논의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2016년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국가기록원 2017)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RMS]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록공동체의 법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스템 도입이 원칙과 정책방향 정립에 선행되는 역행구조는 가속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체제로의 변화로 인한 시스템 관리와 데이터 관리 주체 및 책임이 분리되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원칙,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이영곤 2015b) 등에 대한 공동체 내의 심도 깊은 논의나 법제정비 없이 신규 정보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고 확산되는 중이다.

업무 및 정보기술의 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현재 법령의 규정에는 종이 기록과 전자기록의 관리가 미묘하게 섞여있으며, 세밀한 법조항의 대부분은 종이기록 및 문서형 기록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현문수 외 2017) 문제를 보인다. 편철방식이나 생산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 인해, 종이기록관리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 개념과 프로세스가 법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종이 및 문서형 기록관리 중심의 시스템 설계의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며, 현재 운용되는 표준 RMS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종이/문서형 기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라는 지적(이승억 2017. 6. 17)도 이와 맥을 함께한다. 구체적인 전자기록관리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바탕 위에(양은영 2017. 5. 13) 1999년 및 2006년 법령 제·개정이 진행된 1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의 문제

로 판단될 수 있다.

종이기록에 기반을 둔 관리와 단절하여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이자 태생적 디지털 기록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관리체제를 고수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리적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관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안병우 외 2012; 이승억 2015; 이영남 2017; 현문수 외 2017) 주장이 비중 있게 제기된다. 생산된 모든 유형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관으로의 물리적 이관이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전면적 전자업무 환경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체계 도입의 가속화 역시 현행 3단계 관리체제를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자기록관리의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준다.

이와 함께 많이 제기되는 사안은 전자기록의 분류 및 계층적 관리에 대한 재고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를 기록물 분류(기록물 체계층)에 그대로 적용해, 기록의 이관을 원활하게 지원하거나 충분한 수준으로 기록관리 기준을 반영하기 어렵다. 기록물의 관리와는 활용 목적이 상이한 업무분류체계를 그대로 기록의 분류에 사용함으로써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업무관리시스템 생산 기록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이 체계를 기준으로 기록집합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설문원 2013; 이승억 2016. 6. 17). 따라서 BRM으로 일원화된 분류체계 및 물리적 편철 방식에 따른 기록물철과 기록물건의 계층 구조를 벗어나 다원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 즉 다계층이나 연계형으로(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7; 박성진 2017; 이승억, 설문원 2017; 이승억 2017. 6. 17; 이영남 2017) 기록과 기록집합을 구조화하기 위한 논의가 차츰 시작되고 있다. 업무에 기반하여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는 전제는 유효하겠으나, 이것이 업무분류체계의 수정 없는 재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록물 분류를 위한 클래스로 BRM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기

기록관리에 적절한 집합 단위를 고려해 BRM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를 개발 및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가 제안한 것과 같이 종이기록 중심의 고정적 철-건 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기록간 관계 모형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 기록물, SNS 등은 기존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포괄하기 위해서도 철 구조의 해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생산현황보고, 공개재분류,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등을 포함해 현행 전자기록관리 업무 및 프로세스 일체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취지의 원칙적 논의에서부터 그 이행방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기록관리의 원칙의 재검토 및 장기적 정책 수립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본격적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전자기록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량 이관되고, 첫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과정에 있는 등 전자기록관리 시대의 아카이브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면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아래의 현행 법령이 정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카이브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행기능,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유일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보아도, 재무나 인사 담당 부서가 “주무부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수 기록전문가가 기록을 다루지 않는 “행정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재희 2017, 7)(〈표 3〉 참고).

〈표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 공공기록물법이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제9조; 제10조; 제11조)

- 기록물관리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과 운영(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작성과 관리
-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와 보급(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평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영구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라면 오히려 기록관에게 권한을 양도하라는(양은영 2017. 5. 13) 주장까지도 기록관 실무 전문가에게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장기보존활동은 기록관이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문서를 미리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특수기록관의 준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도 진행되고 있다. 묵인하고 지켜볼 것인지, 명확한 원칙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논의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정책기능 이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카이브로서 어떠한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깊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위기라 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기록 생산 전반의 통제 및 모든 유형의 기록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서부터 공공정보의 활용과 공개 및 역사와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국가기록기관으로까지 확장 가능하다(곽건홍 2017. 3. 11; 오항녕 2017. 3. 11). 점차 확대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정의를 위해서도 국가 및 지방 아카이브로서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능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또한 사회적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업무수행 기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과 국가 간 상호작용, 시민사회 내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기록된 증거를 포괄해야 한다(최재희 2017; 곽건홍 2017. 3. 11; 오항녕 2017. 3. 11). 오히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사회적 기억을 포함한 국가 기록의 관리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역사기록 관리기관과의 통합 및 역사기록관과 국가운영의 기록관을 분리 운영하자는(오항녕 2017. 3. 11)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록의 관리나 기록관리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제는 민간의 기록 기증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 기록 수집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시민단체나 민간 공동체 자체의 기록 관리에 대해 지원하지거나 이를 포괄할 정책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이행되는 자발적 기록관리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지원책을 연구하여 정책 및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재원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단, 현행 법령과 같이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지정하는 방식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싹튼 기록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자발적 활동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환경이 생성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록관의 권한과 책임 역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과 기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법제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토로되었다(권도균 2017. 5. 13; 양은영 2017. 5. 13; 이세진 2017. 5. 13; 현문수 외 2017). 기록관의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도 영구기록물 이외의 한시보존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등 책임있는 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



장되어야 한다는(이승일 2014) 주장이 있다. 이와 달리 안병우 외(2012)는 현행 법령이 정의하는 기록관 업무를 충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처리과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및 업무 수행 인력 충원도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력 충원이 힘든 상황이라면 지리적 여건이나 기능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공동 기록관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존재한다(안병우 2012; 현문수의 2017). 법령상 미비이든 실무 이행상의 문제이든 이는 기록관의 문제로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다. 국가기록관리체제 내에서 유기적이고 실무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록관 업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산부서에서부터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체제의 연속적 업무흐름 내에서의 재정으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명확한 역할 및 기능 정의를 통해 기록관리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역할 책임을 보장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역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의 범위 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에 한하여서만 기록관리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관리기관은 생산현황통보와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및 확정 의무가 부여되는 직접관리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까지 요구받는다. 자체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는 현행 법체계에서 역할 수행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김재호 2017. 5. 13). 다방면에서 모기관의 충분한 지원을 받는 기관의 경우는 담당자의 계획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1인 전문요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현 상황에서는 자율성이 더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모순을 낳는다고(김재호 2017. 5. 13) 지적한

다. 따라서 자율성 보장과 함께 법제상 충분한 업무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체관리기관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제도와 실무를 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자체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의 논의를 담았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록공동체는 그 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기록물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될 법제의 상을 그려나갈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공기록물법은 현행 법령 조항의 문구 수정이나 현 체계 내에서의 보완이 아니라, 법령과 기록관리에 대한 의미 자체에서부터 차근차근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인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세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 기본법령과 세부 시행령, 기록관리 기본법과 관련법 구조 등과 같은 법체계 구조 선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면서도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 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정비도 요구된다. 기록관리영역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에서 정부의 공공업무 이행 및 그 설명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나 법원에서 전자자료의 사법적 증거력에 영향을 미칠 증거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이승익, 설문

원 2017), 증거력 보장의 측면에서도 기록관리영역의 품질요건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이승익 2017. 6. 17). 따라서 다양한 규제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 가능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기록의 4대 품질인 진본성과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와 구현 및 품질평가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이나 법제화 논의 중인 증거법 등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증거로서의 기록 품질 요건 구체화, 단순한 설명책임에서부터 법정 증거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기록을 다루는 타 분야 법령의 기록 요건까지 보장해줄 수 있도록 명료하면서도 구현 가능한 정책 및 법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법령 개정 및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은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 단독의 공공기록물법령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 학회와 전문교육기관 등의 협의를 모아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실무자 그룹에서도 생산기관(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관계가 협력적 업무 구조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협치에 의한 정책 결정과 실무 이행을 요구하는 수준도 강력하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고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므로, 이를 세분하고 개별적으로 다루면서도 각각을 연계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 내용이 공동체 내에서 협의되고, 협의에 바탕을 두어 합의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무 전문가를 포함한 기록공동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공기록관리체제 역시 견고해질 것이다.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으나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부터 하나씩 고민해야 한다. 향후 100년, 200년에 이어질 기록관리의 둘다리를 함께 놓아야 할 때이다. 늦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설정이 이행되길 바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기록

관리 및 기록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 논의와 합의, 지원책이 기록공동체와 시민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0. 11. 8. 총리실, '디가우저' 사용... '사찰' 수십만건 지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82224005&cod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82224005&code=).
- 곽건홍. 2017. 3. 11. '해체와 재구성' - 차기 정보의 역사·기록 분야 조직 개혁 방향.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3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국가기록원. 2011.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작성 절차 및 운영 지침(NAK/A 15: 2011 (v1.0)).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 8. 12.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개설명회 설명자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성남.
- 국가기록원. 2015. 9.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회신공문.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7. 정부기관 기록정보 공유 업무효율 향상 기대. 『e-기록속으로』, 72.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new\\_newsletter/2017/html/vol\\_72/sub03\\_2.html](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new_newsletter/2017/html/vol_72/sub03_2.html).
- 권도균. 2017. 5. 13. 현재의 기록관리 체계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및 제안.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5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013고합1232 제30형사부 판결.
- 손주연. 2016. 공공기관 전자기록물 민간 시설 보존에 관한 쟁점. 『이슈와 논점』, 1120.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8129&currPg=26&cmsCd=CM0018&category=a4&src=&srcTemp=&pageSize=10](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8129&currPg=26&cmsCd=CM0018&category=a4&src=&srcTemp=&pageSize=10).
- 김익한. 2016. 11. 12. 다시 대통령기록이다: 2016 기록현안 토론회 플로어 토론,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김장환. 2016. 국회 기록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기록』 자료집, 49-52.
- 명지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빙연구소. 2017.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 제2차 워크숍 발표자료』. 대전: 국가기록원.
- 박성진. 2017.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89-205.

- 서혜란. 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89-214.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 설문원. 2017. 국가기록관리기구의 권한과 권위, 그리고 분권화. 『국가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5-25.
- 설문원. 2017. 3. 11.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3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토론,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송정숙. 2015.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22-23.
-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
- 안세기. 2015.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27.
-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5. 법안심사자료: 행정자치부 소관국가기록법. 서울: 제337회국회(정기회).
- 양광완. 2015.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25.
- 양은영. 2017. 5. 13. 현장 없는 『공공기록물법』에 대한 기록관의 고민.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5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이광철. 2016. 최순실 사태를 통해 본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법적문제점.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기록』 자료집, 25-35.
- 이상민. 2017. 3. 11. 국정 거버넌스의 거시적 기록화를 위한 대통령기록의 생산 관리.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3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이세진. 2017. 5. 13. 기록관에서의 제도·업무기능 개선 방안.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5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이소연. 2015.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19-21.
- 이승억. 2013. 한국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개선방안 - 기준실행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3-44.
- 이승억. 2014. 동시대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 이승억. 2015. 전자기록 관리정책 전환을 위한 재검토 - 보존포맷·보존매체·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기록인』, 32, 22-29.
- 이승억. 2017. 6. 17.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6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 이영근. 2015a.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24.
- 이영근. 2015b.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기록관리의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기록인』, 32, 40-45.
- 이영남. 2017.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록관리 평가와 전망.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자료집. 36-58.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2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 전일. 2015. 토론 발표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26.
- 전자신문. 2015. 10. 14. 2017년부터 공공기록물 민간저장 허용. <http://www.etnews.com/20151014000072>.
- 조민지, 이영남. 2017.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 국가기록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기록학연구』, 53, 5-43.
-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 최재희. 2016. 최근사태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자료집, 15-21.
- 하승수. 2016.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태를 전면 개혁해야.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기록』 자료집, 36-48.
- 현문수. 2016. 11. 12. 다시 대통령기록이다: 2016 기록현안 토론회 플로어 토론,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 현문수. 2017.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기록학연구』, 53, 261-293.
- 현문수, 정상희, 박민영, 황진현, 이소연. 20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1, 279-306.
- JTBC 뉴스. 2017. 10. 12.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시점 '30분 뒤로' 조작.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9](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9).
- Cumming, Kate & Picot, Anne. 2014. Reinventing appraisal. *Archives & Manuscripts*, 42(2), 133-145.
- LAC. 2014. 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part a: concepts and theory. Retrieved October 3, 2017 from <http://www.bac-lac.gc.ca/eng/services/government-information-resources/disposition/records-appraisal-disposition-program/Pages/appraisal-methodology-part-a-concepts-theory.aspx>.